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

◇ 제·개정 이유

-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직제에 따른 과 명칭 변경, 일부 용어 현행화

◇ 주요내용

- 가. 법 개정 및 직제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(안 제1조, 제2조제7호, 제3조, 제9조, 제14조)
- (법 조항 개정)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
 - (직제 명칭 개정) 정보개발과장 → 정보시스템과장
- 나. 일부 문구 현행화(안 제11조, 제15조)
-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 분류 방법 수정(도형상표분류 지침에 따라 분류)
 - 재검토 기한 수정(매 3년마다 개정 조치)
- 다. 일부 용어 수정(안 제2조제3호, 제2장, 제7조, 제10조)
- 세계지식재산권기구→세계지식재산기구
 - 성립성 → 성립